

공 고

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19 - 1142호

수색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(변경)인가 고시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173(2008. 5.22.)호로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13-81(2013. 9.26.)호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수색·중산재 정비촉진지구내 수색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(변경)인가하고, 같은법 제50조제 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.
2. 또한 같은법 제57조제1항 각호 사항중 의제 처리되는 사항은 본 고시로 관계 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.

2019년 9월 11일

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

1. 정비사업명 : 수색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2. 정비구역 위치(면적) :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동 361번지 일대(면적 : 61,898㎡)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성명 : 수색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(조합장 : 김광섭)
 주소 :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 293, 3층 서광빌딩
4. 변경내용 :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변경 및 도시계획도로 구매 조정 등
 당초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
 변경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97개월
 ※ 변경사유 : 사업시행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시행기간 연장
5. 사업시행인가일 : 2013년 9월 26일
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·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 :

변경없음

7.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: 변경없음

8.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: 변경없음

9. 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

가.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: 변경없음

나.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: 변경없음

다.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토지내역 : 변경없음

10. 기타 관계도서 : 생략 - 은평구청 도시계획과(☎ 351-7422)에 비치